


# JIS (일본공업규격)

## 1. 개요

<p>■ 정의</p>	<p>Japan Industrial Standards (일본공업규격)</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공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 임의규격</li> <li>- JIS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동등이상의 품질성능을 가진 제품 또는 가공품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에 대하여 일본 주무대신이 JIS마크 표시를 허가하는 제도</li> <li>- JIS는 단순히 생산된 제품 또는 가공품의 품질특성이 JIS에 적합한지 아니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제품검사방식’이 아니고, 공장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여 JIS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가공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검사하여 JIS마크 표시를 인정하는‘공장심사방식’을 취하고 있다.</li> </ul>
<p>■ 대상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IS가 제정되어 있는 광공업품의 품목(종목)을 주무대신이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li> <li>- 건설자재, 소비재, 안전·위생관계품목 등 약900건</li> </ul>
<p>■ 인증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지정검사기관에 검사의뢰</li> <li>②공장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정검사기관)</li> <li>③일본공업규격표시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승인)인정기관 또는 해당부처에 신청 (심사보고서 첨부).</li> <li>④신청공장이 제조설비(가공설비), 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기타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기술적 가공조건)이, JIS에 적합하고 해당 공장이 JIS에 적합하는 제품을 앞으로도 계속 제조(또는 가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여, JIS마크의 표시를 인정</li> </ol>

<p>■ 인증마크</p>	
<p>■ 관련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경제산업성 (<a href="http://www.meti.go.jp">www.meti.go.jp</a>)</li> <li>- 일본 공업표준조사회 (<a href="http://www.jisc.go.jp">www.jisc.go.jp</a>)</li> <li>- 일본 규격협회 (<a href="http://www.jisa.or.jp">www.jisa.or.jp</a>)</li> </ul>
<p>■ 적용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li> </ul>
<p>■ 적용규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공업표준화법</li> <li>- JIS</li> </ul>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KS마크 표시제도와 매우 유사</li> <li>- JIS마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조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li> <li>- 심사기준으로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에 관하여 JIS Z 9902(ISO 9002)의 기준이 적용된다.</li> </ul>

## 2. 일반현황

JIS마크 표시는, 인정을 받은 후에 생산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제품에 JIS마크의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은 사내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조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JIS마크의 표시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JIS에 적합한 제품을 "안정적, 또한, 계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정부 또는 제3자 인정기관인 지정(승인)인정기관에 의한 심사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심사조건은 고시에 의해서 정해지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내표준화와 품질관리 추진이 경영자외 전 종업원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

- 책임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는 공업표준화 품질관리 추진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것
- 해당 JIS 등에 의거하여 사내 표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의거하여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

또, 심사기준으로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에 관하여 JIS Z 9902(ISO 9002의 번역)의 기준도 도입하여, 국제거래의 원활화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JIS마크 표시인정을 받은 공장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제도화되어 있어, 입회하의 검사, 공시검사 등이 이루어진다.

JIS마크 표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종목의 지정은, 각각의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건설자재, 소비재, 안전·위생관계품목 등 약900건을 해야리며, 허가공장수도 전국적으로 약16000 공장이 되고 있다.

### 3. JIS마크 제도

#### 가. 품목 또는 종목의 지정

JIS마크 표시제도가 적용되는 품목(또는 종목)은, JIS가 제정되어 있는 광공업품의 품목(또는 종목)을 주무대신이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하게 되어 있다.

이 지정은, 그 품목(또는 종목)의 광공업품의 제조, 거래, 사용·소비의 실정(그 종목의 가공기술에 의하는 가공, 가공의 거래, 가공품의 사용·소비의 실정)을 주무관청이 충분히 조사하여, 일본공업표준 조사회에 자문한 후에 이루어진다. 품목 (또는 종목)의 지정함에 있어서, 가토 표준 코드에 의거하여, "통산성공보", 일간 "통상홍보" 등에 공보 하여 왔지만 금후는 WTO/TBT 통보로 이행한다.

#### 나. 표시인정의 신청

표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광공업품(이하"지정상품"이라고 한다)의 제조업자이며, 또, 가공기술의 종목(이하 "지정가공기술"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가공기술에 의해서 가공을 하는 가공업자이다. 표시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의 1품목(또는 1종목)마다에 공장단위로 일본공업규격 표시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승인)인정기관 또는 해당하는 부처에 신청한다.

#### 다. 심사와 인정

해당 지정(승인)인정기관은 신청을 받으면, 신청공장에 심사원을 파견하여,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에 관하는 제조설비(또는 가공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지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또는 기술적 가공조건)이, JIS에 적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이 JIS에 적합 하는 제품의 제조(또는 가공)를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에, JIS마크의 표시를 인정을 하고 있다.

JIS마크의 표시를 인정받은 공장을 JIS마크표시 인정공장이라고 한다

또한, 지정상품에 대해서 상기의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정상품과 그 포장, 용기 등에, 그 제품이 JIS에 해당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인 경우나, 지정가공기술에 대해서 상기의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지정가공기술에 의해 가공된 광공업품(이하"지정가공품"이라고 한다)이나, 그 포장, 용기 등에, 그 지정가공품의 가공기술이 JIS에 해당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인 경우는,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 라. 인정의 공시

주무대신은, 인정한 품목(또는 종목),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또는 가공업자)의 성명과 명칭, 허가에 관계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관보 등에 공시한다.

#### 마. 인정공장의 감독

주무대신은,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또는 가공업자)에 대해서, 허가 후에도 허가된 품목의 제조공정(인정받은 종목의 가공공정)에서의 품질관리의 상황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제조업자(또는 인정가공업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인정공장에 공장검사를 하여, 표시의 변경,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품)판매정지, 표시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바. 공시검사제도(지정(승인)검사기관에 의한 공장검사)

또, 경제산업성에서는, 1980년도부터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의 JIS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JIS를 개정했을 때와, 품질보증의 상황 등으로 보아,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지정상품(또는 지정가공기술)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민간의 검사기관의 명칭("지정(승인)검사기관"이라고 한다) 등을 공시하여, 그 검사기관에 의한 JIS마크 표시인정공장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사. 상품의 감시

경제산업성에서는, JIS지정상품의 품질, JIS마크의 표시상황에 대해서 일반소비자에게 감시를 받기 위해, 모니터(소비생활개선감시원)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또, 공업표준화법에서는, JIS지정상품의 품질 등이 JIS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주무대신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주무대신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 JIS마크제품을 매상하여 JIS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방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감시하는 매상 테스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4. JIS 인증을 취득한 품목

A5705(비닐계바닥재)	볼트,너트,와셔
G4305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판및강대	수도꼭지
JIS K 6769	아연도철선
K6778	압력계
냉간인발강관	연강철선,아연도금연강선,
못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